

9. 소득세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원공고 제1998-7호 1998. 1. 13.

주요 골자

- 가. 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벽지의 범위에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북한의 경수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추가하여 이들 지역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토록 함.
- 나. 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직전의 기준시가 상승률에 의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 이전에 양도하는 자산에 한정하여 양도일부터 2월내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시가 상승률에 의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함.
- 다. 다단계판매원 및 방문판매원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소득률을 최근연도의 표준소득률을 감안하여 수입금액 4천만원이하분에 대하여는 40퍼센트(방문판매원의 경우에는 36퍼센트),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56퍼센트(방문판매원의 경우에는 50퍼센트)로 정함.

개 정 취 지

소득세법의 개정(1997. 12. 13, 법률 제5,424호)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5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택회보